

1. 개정이유

친환경어업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기관 지정·취소 기준과 친환경 문구 유사표시 세부기준을 규정하는 등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2019.8.27.)의 구체적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내수면 양식장 용수 범위를 확대하여 기존 인증기준의 미비점을 해소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육훈련 기관지정과 취소 기준 신설(안 제7조의2 및 3)

- 1) 교육훈련 기관 지정요건, 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훈련을 전담하고 있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 2) 교육훈련기관의 법정 사항 위반 시 업무정지, 지정취소 등의 처분 기준을 마련함

나. 인증 재심사 여부 통지의무 신설(안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인증을 받지 못하여 재심사를 요청한 경우 인증기관은 재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사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는 경우 재심사를 결정한 것으로 간주

다. 친환경 문구 유사표시 세부기준 신설(안 제35조)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친환경 문구 유사표시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함

라.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 조사결과에 대한 재검사 신설(안 제35조의3)

법 제31조에 따라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에 대한 인증의무 이행조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마. 내수면 양식장 사용용수 범위 확대(별표3, 별표11)

유기식품 및 무항생제 인증기준에는 내수면 양식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용수를 하천과 호소만 규정하고 있어, 지하수, 수도 등 사람이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하게 관리되는 물까지 사용용수로 확대코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에 제7조의2 제1항부터 제9항 및 제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교육훈련기관의 지정)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교육훈련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지정 신청기간 등 교육훈련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기간에 별지 제1호의2 서식 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3항 각 호의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교육과정, 교육내용, 교육방법 및 교육일정 등이 포함된 교육훈련 운영계획서
3. 정관(법인만 해당한다) 또는 이에 준하는 조직운영 규정 등에 관한 서류

③ 교육훈련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환경어업과 관련된 기술개발·연구·보급, 지도·교육 또는 표준 모델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비영리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할 것
2. 교육훈련을 전담하는 관리자를 1명 이상 지정하고 별도의 운영조직을 갖출 것
3. 교육훈련 과정 개설, 교육생 모집, 교육훈련 비용 산정, 강사의 선정 기준, 교육훈련 수료 기준, 교육훈련 과정 평가, 불만 처리절차, 관련 기록·자료의 보관, 개인정보의 보호 등 교육훈련의 운영에 적용되는 자체 교육훈련 규정을 갖출 것
4.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부터 인증 심사원 자격을 부여받은 자 1명 이상이 상임할 것
5.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다음 각 목의 교육훈련용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출 것

가. 독립적으로 구분되는 사무실, 강의실, 휴게실 및 화장실 등을 갖출 것

나. 책상, 의자, 탁자, 컴퓨터, 스크린 및 음향시설 등 교육훈련에 필요한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출 것

④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심사계획서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4항에 따른 심사결과 제2항의 지정 기준에 적합할 때에는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교육훈련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5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지정번호 및 지정일

2. 교육훈련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3. 교육훈련기관의 대표자 성명

4. 교육훈련 분야

⑦ 제5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그 지정내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의4 서식의 교육훈련기관 지정내용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훈련기관 지정서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⑧ 제7항에 따른 변경신청서를 받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변경내용이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 등에 적합하면 교육훈련기관 지정서를 새로 발급하여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7조의3(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등)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은 별표14와 같다.

제8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

가. 유기수산물(양식수산물만 해당한다)

나. 유기수산물을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하는 제품

2.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사업자가 취급하는 제품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다)의 장”을 “한다)에”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인증기관의 장”을 “인증기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전단 중 “법 제20조제4항”을 “법 제20조제5항”으로, “인증기관의 장에게”를 “인증기관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재심사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사 여부를 해당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내에 재심사 여부 또는 민원처리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재심사를 결정한 것으로 본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증기관의 장”을 “인증기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0조제5항”을 “법 제20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증기관의 장에게”를 “인증기관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인증기관의 장”을 “인증기관”으로 한다.

제15조 전단 중 “인증기관의 장에게”를 “인증기관에”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인증기관의 장에게”를 각각 “인증기관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인증기관의 장”을 “인증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재심사의 신청 등) 법 제21조제7항에 따른 인증갱신 및 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재심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규칙 제12조를 준

용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증기관의 장”을 “인증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인증기관의 장에게”를 “인증기관에”로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증기관의 장”을 각각 “인증기관”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증기관의 장”을 각각 “인증기관”으로 한다.

제33조제3항 중 “인증기관의 장”을 “인증기관”으로 한다.

제35조를 제35조의2로 하고, 같은 조(중전의 제35조) 제3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품등의 조사결과 제9조제1항에서 정한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그 인증사업자등에게 그 조사 결과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문서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인증사업자 등은 조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여야 하며, 별지 제14호의2서식 인증품 재검사 신청서에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통보받기 30일 이내에 동일 인증품등에 대해 적합으로 통보받은 검사성적서(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인

정하는 검사기관이 발급한 것으로 생산, 제조·가공, 취급 일자 및
검사항목이 동일한 검사성적서에 한정한다)가 있는 경우

2. 조사공무원 또는 인증심사원이 인증품등의 시료수거 절차 및 방법
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인증품등의 시료수거 과정에 오류가 인정된
경우

3. 그 밖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재조사를 요청받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
증기관은 재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는 재조사를 요청한 인증사업자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제1호 따른 재검사는 동일 시료
에 대한 분석에 한정하고 제3항제2호에 따른 재검사는 시료를 다시 수
거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제1호에 따른 재검사의 경우 동
일 시료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시료를 다시 수거하여 분석할 수 있다.

⑥ 인증사업자는 제5항에 따라 실시한 재검사 결과에 대해 다시 재검
사를 요청할 수 없다.

제35조(친환경 문구와 유사한 표시) ①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친환경
문구와 유사한 표시는 제품의 명칭·특성·생산방법·원재료 정보·품질
정보 등을 나타내거나 알리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문구를 표
시하는 것을 말한다.

1. “유기”, “무항생제”, “활성처리제 비사용” 문구(문구의 일부 또는 전
부를 한자로 표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포함된 문자 또는 도형의
표시로서 인증제품으로 오인 가능한 표시

2. “Organic”, “Non Antibiotic”, “Antibiotic Free”, “Non Activator”, “Activator Free” 등 외국어 또는 외래어가 포함된 문자 또는 도형의 표시

3. 그 밖에 친환경 인증 수산물로 인지할 수 있다는 판단되는 것으로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고시하는 표시

② 제3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 따라 인증받은 유사표기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증기관의 장에게”를 “인증기관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인증기관의 장”을 “인증기관”으로 한다.

별표3 제2호나목2) 전단 중 “하천수인 경우”를 “「하천법」 제2조제1호의 하천”으로, “호소인 용수인 경우”를 “「물환경 보전법」 제2조제14호의 호소(이하 “호소”라 한다)인 경우”로 하고, 같은 2) 후단 중 “Ib 등급 이상이어야 한다.”를 “Ib등급 이상이어야 하고, 사용용수가 「지하수법」 제2조제호의 지하수(이하, “지하수”라 한다)인 경우 「지하수법」 제20조제2항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에서 정한 농·업요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별표3 제3호마목3) 후단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유기가공식품 제조과정 중 해수를 사용하는 경우 수질기준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제3호 라목1) 및 4)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질의 시험방법은 「해양환경관리법」 제10조에 따른 해양환경공정 시험기준에 따른다.

별표 6 제4호를 삭제한다.

별표 11 제1호나목2)다)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다음 항목이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별표4 제2호의 농·어업용수 기준에 적합할 것(지하수를 용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수소이온농도(pH)
- 질산성질소
- 염소이온
- 카드뮴
- 비소
- 시안
- 수은
- 다이아지논
- 파라티온
- 페놀
- 납
- 크롬
- 트리클로로에틸렌
- 테트라클로에틸렌
- 트리클로로에탄

별표 12 제2호 표 하단의 “비고:”천연“, ”무공해“ 또는 소비자에게 혼동을 초래할 수 있는 표시를 하지 아니할 것”을 삭제한다.

별표 1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중 “인증기관의 장”을 “인증기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중 “인증기관의 장”을 “인증기관”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

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인증기관의 장”을 “인증기관”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인증기관의 장”을 “인증기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DIRECTOR OF CERTIFICATION”를 “CERTIFICATION”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중 “인증기관의 장”을 “인증기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DIRECTOR OF CERTIFICATION”를 “CERTIFICATION”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신청인 중 “인증기관의 장”을 각각 “인증기관”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중 “인증기관의 장”을 “인증기관”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중 “인증기관의 장”을 “인증기관”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심사 및 재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 제35조의3의 신설조항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재심사 또는 재검사 신청된 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적용례) 별표14 제2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처분기준은 이 규칙 시행 후 발생한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7조의2(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교육훈련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지정 신청기간 등 교육훈련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u>
<u><신 설></u>	<u>②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기간에 별지 제1호의2 서식 교육훈련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u>1. 제3항 각 호의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u> <u>2. 교육과정, 교육내용, 교육방법 및 교육일정 등이 포함된 교육훈련 운영계획서</u> <u>3. 정관(법인만 해당한다) 또는 이에 준하는 조직운영 규정 등에 관한 서류</u>

<신 설>

③ 교육훈련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환경어업과 관련된 기술개발·연구·보급, 지도·교육 또는 표준모델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비영리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할 것

2. 교육훈련을 전담하는 관리자를 1명 이상 지정하고 별도의 운영조직을 갖출 것

3. 교육훈련 과정 개설, 교육생 모집, 교육훈련 비용 산정, 강사의 선정 기준, 교육훈련 수료 기준, 교육훈련 과정 평가, 불만 처리절차, 관련 기록·자료의 보관, 개인정보의 보호 등 교육훈련의 운영에 적용되는 자체 교육훈련 규정을 갖출 것

4.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부터 인증심사원 자격을 부여받은 자 1명 이상이 상임할 것

5.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다음 각 목의 교육훈련용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출 것

가. 독립적으로 구분되는 사무

실, 강의실, 휴게실 및 화장실 등을 갖추 것

나. 책상, 의자, 탁자, 컴퓨터, 스크린 및 음향시설 등 교육훈련에 필요한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추 것

<신 설>

④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심사계획서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신 설>

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4항에 따른 심사결과 제2항의 지정기준에 적합할 때에는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교육훈련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 설>

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5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지정번호 및 지정일

2. 교육훈련기관의 명칭 및 소재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지

3. 교육훈련기관의 대표자 성명

4. 교육훈련 분야

⑦ 제5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그 지정내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교육훈련기관 지정내용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훈련기관 지정서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⑧ 제7항에 따른 변경신청서를 받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변경내용이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 등에 적합하면 교육훈련기관 지정서를 새로 발급하여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7조의3(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

제8조(유기식품의 인증대상)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기식품의 인증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u>유기수산물을 생산하는 자. 다만, 양식수산물을 생산하는 경우만 해당한다.</u> 나. <u>유기가공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자</u> 2.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을 취급하는 자 ② (생 략) 제10조(유기식품의 인증 신청)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유기식품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법 제26조제1	<u>소 등)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은 별표14와 같다.</u> 제8조(유기식품의 인증대상) ① - ----- ----- ---. 1. ----- ----- <u>식품</u> 가. <u>유기수산물. (양식수산물만 해당한다).</u> 나. <u>유기수산물을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하는 제품</u> 2. ----- ----- <u>식품사업자가 취급하는 제품</u>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유기식품의 인증 신청) -- ----- ----- ----- ----- ----- -----
---	--

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
(이하 이 장에서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4. (생략)

제11조(유기식품의 인증심사 절차
등) 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은 제10조에
따른 인증 신청을 받거나 제16
조에 따른 인증의 갱신 신청 또
는 인증품 유효기간 연장승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10일 이
내에 인증심사계획을 세워 신청
인에게 인증심사 일정과 인증심
사원 명단을 알리고 그 계획에
따라 인증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12조(재심사 신청 등) ① 인증
을 받지 못하여 법 제20조제4항
에 따른 재심사(이하 이 장에서
“재심사”라 한다)를 신청하려는
자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부
적합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인증
재심사 신청서에 재심사 신청사
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

--- 한다)에-----
-----.

1. ~ 4. (현행과 같음)

제11조(유기식품의 인증심사 절차
등) ① -----
--- 인증기관-----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재심사 신청 등) ① -----
----- 법 제20조제5항-----

부하여 그 인증심사를 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재심사 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재심사를 신청할 수 없다.

<신 설>

<신 설>

② (생 략)

제13조(인증서의 발급)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신청에 대하여 해당 구분에 따른 심사를 실시하여 제9조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7호

-----인증기관에-----.

-----.

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재심사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사 여부를 해당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내에 재심사 여부 또는 민원처리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재심사를 결정한 것으로 본다.

④ (현행 제2항과 같음)

제13조(인증서의 발급) -----
----- 인증기관 -----

서식의 인증서 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
다.

1. ~ 3. (생 략)

제14조(인증 변경승인 등) ①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인증 변경
승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 략)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
하려는 인증사업자는 별지 제9
호서식의 인증 변경승인 신청서
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
여 그 인증을 한 국립수산물품
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③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
는 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
른 인증 변경을 승인하는 경우
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인증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인증서
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5조(인증서의 재발급) 제13조
또는 제14조제3항에 따라 인증
서를 발급받은 자는 그 인증서
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

1. ~ 3. (현행과 같음)

제14조(인증 변경승인 등) ① 법
제20조제8항-----
-----.

1. · 2. (현행과 같음)

② -----

----- 인증기관에 -
-----.

1. · 2. (현행과 같음)

③ -----
--- 인증기관-----

-----.

제15조(인증서의 재발급) -----

된 때에는 사유서를 그 인증서를 발급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인증서를 재발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인증서가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을 때에는 그 헐어 못 쓰게 된 인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6조(인증의 갱신 등) ① 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인증 갱신 및 인증품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해당 인증을 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에게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 4. (생략)

② 인증사업자는 인증을 한 인증기관이 폐업, 업무정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증 갱신 신청 또는 인증품 유효기간 연장승인 신청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21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국

----- 인증기관에 -----

-----.

-----.

제16조(인증의 갱신 등) ① -----

----- 인증기관에 -----

-----.

1. ~ 4. (현행과 같음)

② -----

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다른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인증 갱신 또는 인증품 유효기간 연장승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 인증을 한 인증기관으로부터 그 인증의 신청 및 심사 등에 관한 일체의 서류와 사후관리비용 정산액(사후관리비용을 미리 낸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돌려받아 인증업무를 새로 맡게 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다른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인증을 받은 자에게 인증 갱신 또는 유효기간 연장 절차와 해당 기간까지 갱신·연장을 받지 아니하면 인증 갱신 및 유효기간 연장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④ (생략)

<신 설>

 --- 인증기관에 -----

 -----.

--- 인증기관에 -----
 ---.

③ -----
 --- 인증기관-----

 -----.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의2(재심사의 신청 등) 법
제21조제7항에 따른 인증갱신
및 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재심
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제30조(인증기관의 지정 갱신 절차) ①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갱신하려는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별지 제11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 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② (생략)

③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4개월 전까지 인증기관의 장에게 갱신 절차와 해당 기간까지 갱신을 받지 아니하면 갱신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④ (생략)

제31조(인증기관의 지정내용 변경 신고 등) ① 인증기관의 장은 지정받은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법 제26조제5

규칙 제12조를 준용한다.

제30조(인증기관의 지정 갱신 절차) ① -----

-- 인증기관-----

--.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인증기
관에 -----

-----.

④ (현행과 같음)

제31조(인증기관의 지정내용 변경 신고 등) ① 인증기관-----

항 본문에 따라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에 지정내용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2. (생략)

② 인증기관의 장은 지정받은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6조제5항 단서에 따라 별지 제13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승인 신청서에 변경하려는 사항이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2. (생략)

③ (생략)

제32조(인증기관 등의 준수사항)

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3호에 따라 인증신청서와 첨부서류, 인증심사보고서와 심사

-----.

1. 2. (현행과 같음)

② 인증기관-----

-----.

1. 2.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32조(인증기관 등의 준수사항)

① -----
--- 인증기관-----

자료, 인증사업자에 대한 사후
관리 자료를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 2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인증기관의 장은 법 제27조
제4호에 따라 인증 결과 및 사
후관리 결과 등을 보고할 때에
는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
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④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
는 인증기관의 장은 법 제27조
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사업자
에 대하여 제11조제2항에서 정
한 인증심사의 절차와 방법을
준용하여 불시(不時) 심사를 하
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2. (생략)

제33조(인증업무의 휴업·폐업 신고) ①·② (생략)

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
른 휴업(폐업) 신고서가 수리되
면 7일 이내에 그 인증기관의
인증 유효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

② (현행과 같음)

③ 인증기관-----

-----.

④ -----
--- 인증기관-----

-----.

1. 2. (현행과 같음)

제33조(인증업무의 휴업·폐업 신고)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인증기관-----

인증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문서 등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신 설>

-----.

제35조(친환경 문구와 유사한 표시) ①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친환경 문구와 유사한 표시는 제품의 명칭·특성·생산방법·원재료 정보·품질정보 등을 나타내거나 알리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문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1. “유기”, “무항생제”, “활성처리제 비사용” 문구(문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한자로 표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포함된 문자 또는 도형의 표시로서 인증제품으로 오인 가능한 표시
2. “Organic”, “Non Antibiotic”, “Antibiotic Free”, “Non Activator”, “Activator Free” 등 외국어 또는 외래어가 포함된 문자 또는 도형의 표시
3. 그 밖에 친환경 인증 수산물로 인지할 수 있다는 판단되는 것으로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고시하는 표시

제35조 (생 략)

② 제3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
에 따라 인증받은 유사표기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35조의2 ① ~ ② (현행 제35조

① ~ ②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인증품등의 조
사결과 제9조제1항에서 정한 인
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그
인증사업자등에게 그 조사 결과
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자
우편, 팩스, 전화 또는 문서 등
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에 이
의가 있는 인증사업자 등은 조
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
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하나
에 해당하여야 하며, 별지 제14
호의2서식 인증품 재검사 신청
서에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
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국립수
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
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통
보받기 30일 이내에 동일 인증

품등에 대해 적합으로 통보받은
검사성적서(국립수산물품질관
리원장이 인정하는 검사기관이
발급한 것으로 생산, 제조·가
공, 취급 일자 및 검사항목이 동
일한 검사성적서에 한정한다)가
있는 경우

2. 조사공무원 또는 인증심사원
이 인증품등의 시료수거 절차
및 방법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인증품등의 시료수거 과정에 오
류가 인정된 경우

3. 그 밖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
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재조사를 요청
받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재검사를 실시
하고 그 결과는 재조사를 요청
한 인증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제1호 따른
재검사는 동일 시료에 대한 분
석에 한정하고 제3항제2호에 따
른 재검사는 시료를 다시 수거
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다만, 제
4항제1호에 따른 재검사의 경우

제37조(인증사업자 및 인증기관의 승계)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인증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인증사업자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심사를 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u>인증기관의 장에게</u>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u>인증기관의 장</u>은 제1항에 따른 인증사업자 승계신고서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인증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u>동일 시료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시료를 다시 수거하여 분석할 수 있다.</u> ⑥ <u>인증사업자는 제5항에 따라 실시한 재검사 결과에 대해 다시 재검사를 요청할 수 없다.</u> ⑦ <u>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조사의 주기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특별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u> 제37조(인증사업자 및 인증기관의 승계) ① ----- ----- ----- ----- ----- ----- --- <u>인증기관에</u> ----- ----- -----. 1. ~ 3. (현행과 같음) ② ----- --- <u>인증기관</u>----- ----- ----- -----.
---	---

[별표 3]

유기식품의 인증기준(제9조제1항 관련)

2. 유기수산물의 생산자

나. 양식장 환경	1) 육상양식장의 사용 용수(해수) 또는 해상가두리가 위치한 해역의 수질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제3호라목1) 및 4)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질의 시험방법은 「해양환경관리법」 제10조에 따른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2) 내수면양식장의 사용 용수가 「하천법」 제2조제1호의 하천(이하, “하천”이라 한다)인 경우 그 수질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제3호가목1)에 적합하고 같은 목 2)의 Ib등급 이상이어야 하며, 사용 용수가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4호의 호소(이하, “호소”라 한다)인 경우 그 수질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제3호나목1)에 적합하고 같은 목 2)의 Ib등급 이상이어야 하고, 사용 용수가 「지하수법」 제2조제1호의 지하수(이하, “지하수”라 한다)인 경우 「지하수법」 제20조제2항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에서 정한 농·어업용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질의 시험방법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	---

3. 유기가공식품의 제조·가공자

마. 세척 및 소독	1) 유기가공식품에는 시설이나 설비 또는 원료의 세척, 살균, 소독에 사용된 물질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사업자는 유기 생산, 유기가공식품의 제조·가공 또는 취급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되지 않은 물질이나 해충, 병원균, 그 밖의 이
---------------	--

	물질로부터 유기가공식품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3)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기준에 적합한 먹는물과 별표 1 제1호나목의 식품첨가물 또는 가공보조제는 유기가공식품 표면이나 유기가공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표면의 세척제 및 소독제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유기가공식품 제조과정 중 해수를 사용하는 경우 수질기준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제3호 라목1) 및 4)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질의 시험방법은 「해양환경관리법」 제10조에 따른 해양환경공정 시험기준에 따른다. 4) 세척제·소독제를 시설 및 장비에 사용하는 경우 유기가공식품의 유기적 순수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

[별표6]

유기식품의 인증정보 표시방법(제18조제2항 관련)

1. 인증품 또는 인증품의 포장·용기에 표시하는 방법

가. 표시사항은 해당 인증품을 포장한 사업자의 인증정보와 일치하여야 하며, 해당 인증품의 생산자가 포장자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생산자의 인증정보를 추가로 표시하여야 한다.

나. 각 항목의 구체적인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인증사업자의 성명 또는 업체명: 인증서에 기재된 명칭(생산자단체가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생산자단체명)을 표시하되, 생산자단체로 인증 받았으나 개별 생산자명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생산자단체명 뒤에 개별 생산자명을 괄호로 표시할 수 있다.
- 2) 전화번호: 해당 제품의 품질관리와 관련하여 소비자 상담이 가능한 판매원의 전화번호를 표시한다.
- 3) 포장작업장 주소: 해당 제품을 포장한 작업장의 주소(도로명 주소를 적지 않는 경우에는 번지까지)를 표시한다.
- 4) 인증번호와 인증기관명: 인증서에 기재된 인증번호와 해당 인증서를 발급한 인증기관명을 표시한다. 이 경우 인증기관명은 약칭을 사용할 수 있다.
- 5) 생산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한다.

2. 납품서, 거래 명세서 또는 보증서 등에 표시하는 방법

인증품을 포장하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산물(散物)로 거래하는 경우 및 공급받는 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급하는 자가 발행하는 납품서, 거래 명세서 또는 보증서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 1) 제1호나목1)부터 5)까지의 표시사항
- 2) 공급하는 자의 명칭과 공급받는 자의 명칭

3) 인증품 거래 품목, 거래 수량 및 거래일

3. 표시판 또는 풋말로 표시하는 방법

가. 포장하지 않고 판매하거나 날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품 판매대의 표시판 또는 풋말에 제1호나목1)부터 5)까지의 표시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나. 가목에 따라 표시하려는 경우 인증품이 아닌 제품과 섞이지 않도록 판매대, 판매구역 등을 구분하여야 한다.

~~4. 그 밖의 표시사항~~

~~—이 표에 따른 표시 외에 "천연", "무공해" 및 "저공해" 등 소비자에게 혼동을 초래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별표 11]

무항생제 수산물등의 인증기준(제39조제1항 관련)

1. 무항생제수산물의 생산자

나. 양식장 환경	1) 육상양식장의 사용 용수(해수) 또는 해상가두리가 위치한 해역의 수질은 다음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질의 시험방법은 「해양환경관리법」 제10조에 따른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가) 다음 항목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제3호라목1)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총대장균군 나) 다음 항목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제3호라목4)의 기준 중 각각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카드뮴(Cd) - 수은(Hg) -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 2) 내수면양식장의 사용 용수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질의 시험방법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가) 다음 항목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제3호가목1) 및 같은 목 2)의 Ib등급 중 각각의 기준에 적합할 것(하천을 용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용존산소량(DO) - 대장균군 · 총대장균군 · 분원성대장균군 - 카드뮴(Cd) - 수은(Hg) -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 나) 다음 항목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제3호나목1) 및 같은 목 2)의 Ib등급 중 각각의 기준에 적합할 것(호소를 용수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용존산소량(DO) - 대장균군 · 총대장균군 · 분원성대장균군 - 카드뮴(Cd) - 수은(Hg) -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
-----------	---

	다) 다음 항목이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별표4 제 2호의 농·어업용수 기준에 적합할 것(지하수를 용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수소이온농도(pH) - 질산성질소 - 염소이온 - 카드뮴 - 비소 - 시안 - 수은 - 다이아지논 - 파라티온 - 페놀 - 납 - 크롬 - 트리클로로에틸렌 - 테트라클로에틸렌 - 트리클로로에탄
--	--

[별표 12]

무항생제수산물등의 표시 기준 (제44조제1항 관련)

1. 표시 도형

가. 무항생제수산물



인증기관명:

인증번호:



Name of Certifying Body:

Certificate Number:

나.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인증기관명:

인증번호:



Name of Certifying Body:

Certificate Number:

다. 작도법

1) 도형 표시

가) 표시 도형의 가로 길이(사각형의 왼쪽 끝과 오른쪽 끝의 폭: W)를 기준으로 세로 길이는 $0.95 \times W$ 의 비율로 한다.

나) 표시 도형의 흰색 모양과 바깥 테두리(좌·우 및 상단부 부분에만 해당한다)의 간격은 $0.1 \times W$ 로 한다.

다) 표시 도형의 흰색 모양 하단부 좌측 태극의 시작점은 상단부에서 $0.55 \times W$ 아래가 되는 지점으로 하고, 우측 태극의 끝점은 상단부에서 $0.75 \times W$ 아래가 되는 지점으로 한다.

2) 제1호가목의 표시 도형 내부의 "무항생제"의 글자는 품목에 따라 "무

항생제수산물"로 표기할 수 있다.

- 3) 제1호나목의 표시 도형 내부의 "활성처리제 비사용"의 글자는 품목에 따라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로 표기할 수 있다.
- 4) 표시 도형의 국문 및 영문 모두 글자의 활자체는 고딕체로 하고, 글자 크기는 표시 도형의 크기에 따라 조정한다.
- 5) 표시 도형의 색상은 녹색을 기본색상으로 하고, 포장재의 색깔 등을 고려하여 파란색, 빨간색 또는 검은색으로 할 수 있다.
- 6) 표시 도형 내부의 "무항생제", "활성처리제 비사용", "(NON ANTIBIOTIC)", "(NON ACTIVATOR)", "NON ANTIBIOTIC", "NON ACTIVATOR"의 글자 색상은 표시 도형 색상과 동일하게 하고, 하단의 "해양수산부"와 "MOF KOREA"의 글자는 흰색으로 한다.
- 7) 배색 비율은 녹색 C80 + Y100, 파랑색 C100 + M70, 빨강색 M100 + Y100 + K10으로 한다.
- 8) 표시 도형의 크기는 포장재의 크기에 따라 조정한다.
- 9) 표시 도형의 위치는 포장재 주 표시면의 측면에 표시하되, 포장재 구조상 측면표시가 어려울 경우에는 표시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 10) 표시 도형 밑 또는 좌·우 옆면에 인증기관명과 인증번호를 표시한다.

2. 표시문자

구 분	표 시 문 자
무항생제수산물	○ 무항생제, 무항생제수산물, 무항생제○○ 또는 무항생제 양식 ○○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 활성처리제 비사용,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활성처리제 비사용 ○○ 또는 활성처리제 비사용 양식 ○○

~~비고: "천연", "무공해" 또는 "저공해" 등 소비자에게 혼동을 초래할 수 있는 표시를 하지 아니할 것~~

[별표 14] <신 설>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제7조의3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별 처분기준의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에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적발된 날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제3자 또는 주변 환경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시험기관 또는 센터를 모범적으로 운영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14조의2제 1항제1호	지정 취소		
나.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교육·훈련을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4조의2제 1항제2호	시정 명령 업무	지정 취소 업무	
다.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지원 비용을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법 제14조의2제 1항제3호	정지 3 개월	정지 6 개월	지정 취소
라. 제14조제4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 제14조의2제 1항제4호	시정 명령	업무 정지 3 개월	지정 취소

■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신설.>

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기관명·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설립 연도 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소재지		전화번호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교육훈련 분야 (주요 과정명 3개 이내)	1.		
	2.		
	3.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및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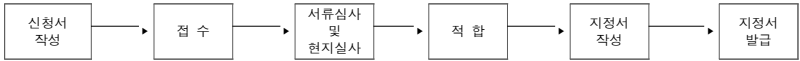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제3항 각 호의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교육 과정, 교육 내용, 교육 방법 및 교육 일정 등이 포함된 교육훈련 운영계획서 1부 3. 정관(법인만 해당한다) 또는 이에 준하는 조직 운영 규정 등에 관한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신청인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

제 호

교육훈련기관 지정서

1. 명 칭:

2. 대표자: (생년월일)

3. 소재지:

4. 교육훈련 분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및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제5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직인

교육훈련기관 지정내용 변경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	------	------	-----

신고인	기관명 (기관지정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소재지	전화번호	

변경내용 (※별지로 작성할 수 있음)	변경항목	현행	변경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및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제7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 지정내용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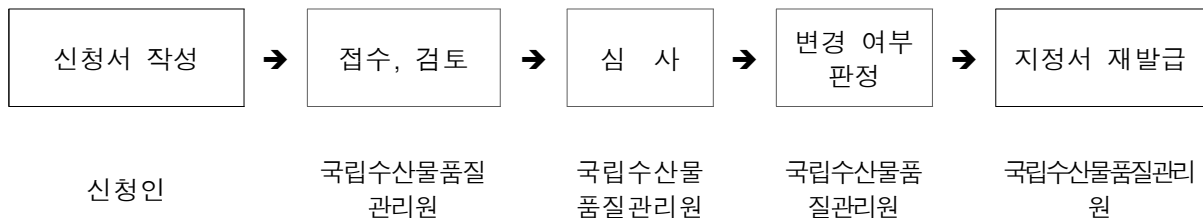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첨부서류	1. 교육훈련기관 지정서 원본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수수료 없음
------	---	---------------

처 리 절 차



210mm×297mm(백상지 80g/㎡)

인증신청서(생산자용)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개월
------	------	----------

신청인	신청단위 [] 개인, [] 법인, [] 단체	
	성명(단체명)	생산자 수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인증구분 [] 유기수산물, [] 무항생제수산물, []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신청구분 [] 최초 신청, [] 갱신 신청, [] 인증품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
	사업장 소재지
	신청면적(㎡)
	신청품목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1조(제34조) 및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제16조, 제4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인증기관 **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 품 생산계획서 1부 2.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의 경영 관련 자료 1부 3. 사업장의 경계면을 표시한 지도 1부 4. 생산에 관련된 작업장의 구조와 용도를 적은 도면(작업장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수수료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및 별표 13에 따른 수수료
------	--	--

동 의 서

1. 인증업무 처리를 목적으로 위 신청인 정보와 신청 내용을 인증유효기간 동안 수집·이용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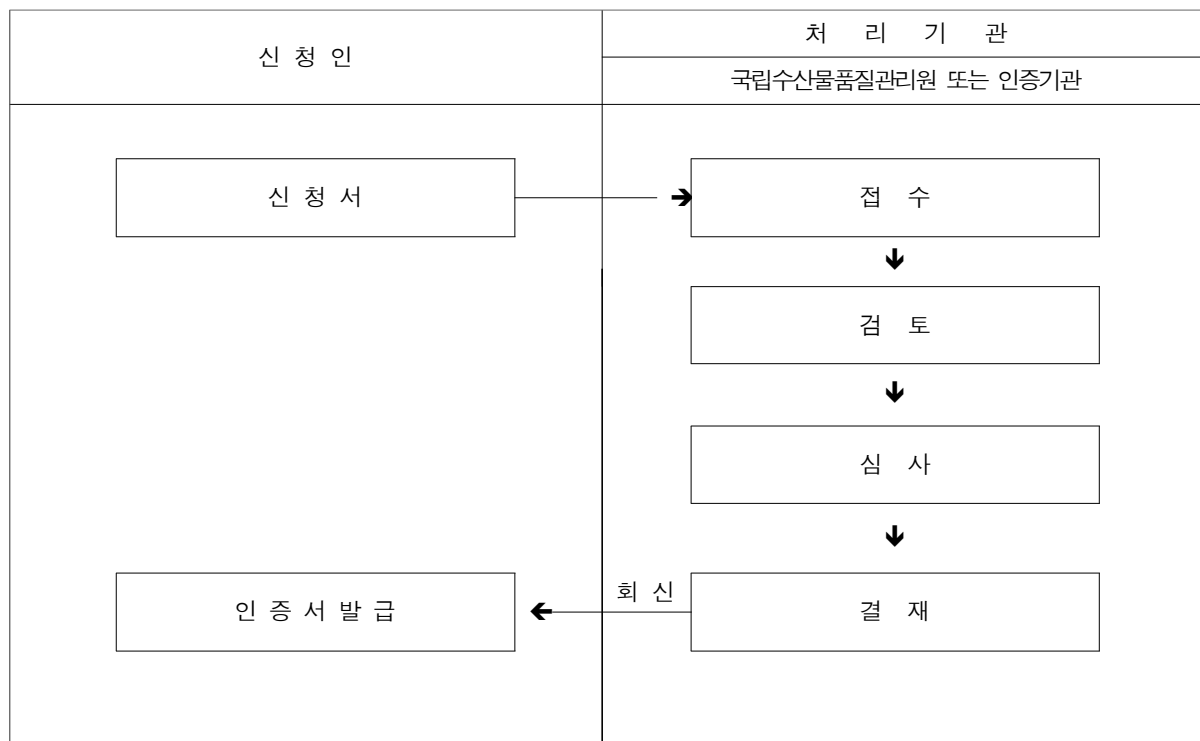
2. 인증품의 유통활성화를 목적으로 인증을 받은 자의 정보와 인증내용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친환경농어업 육성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은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 방법

1.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2. 작성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3. 문자는 검은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원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4. 신청 단위는 인증을 받으려는 주체에 따라 개인, 법인, 단체로 구분하여 √표시하며 개인과 법인은 생산자 수를 1로 적고, 단체는 인증 신청한 집단의 소속 생산자 수(1가구를 1로 계산합니다)를 적습니다.
5. 주소란에는 법인 또는 단체, 어가(漁家)의 도로명 주소를 적습니다.
6. 사업장 소재지는 지번까지 적어야 하며, 소재지가 여러 곳인 경우에는 별지를 첨부하여 적습니다.
7. 신청품목은 인증 신청한 품목의 명칭을 모두 적습니다.
8. 신청인이 단체인 경우에는 인증품 생산계획서를 생산자별로 작성합니다.
9. 인증 갱신신청 또는 인증품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할 때에는 첨부서류 중 제3호 및 제4호는 관련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인증신청서(제조·가공 또는 취급자용)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개월
신청인	신청단위 [] 개인, [] 법인, [] 단체	
	성명(단체명)	취급자 수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인증구분 제조·가공자: [] 유기가공식품 취급자: [] 저장자, [] 포장자, [] 운송자, [] 수입자, [] 판매자	
	신청구분 [] 최초 인증 신청, [] 갱신 신청, [] 유효기간 연장 신청	
	사업장 소재지	
	신청면적(㎡)	
	신청품목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1조(제34조) 및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제16조, 제4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인증기관 **의 장**

첨 부 서 료	1.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인증품 제조·가공 및 취급 계획서 1부 2.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의 경영 관련 자료 1부 3. 사업장의 경계면을 표시한 지도 1부 4. 제조·가공, 취급에 관련된 작업장의 구조와 용도를 적은 도면(작업장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수수료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및 별표 13에 따른 수수료
------------------	---	--

동 의 서

1. 유기식품(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상기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인증유효기간 동안 수집
· 이용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 유기식품(무항생제수산물등)의 유통활성화를 목적으로 인증을 받은 자의 정보와 인증내용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친환경농어업 육성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은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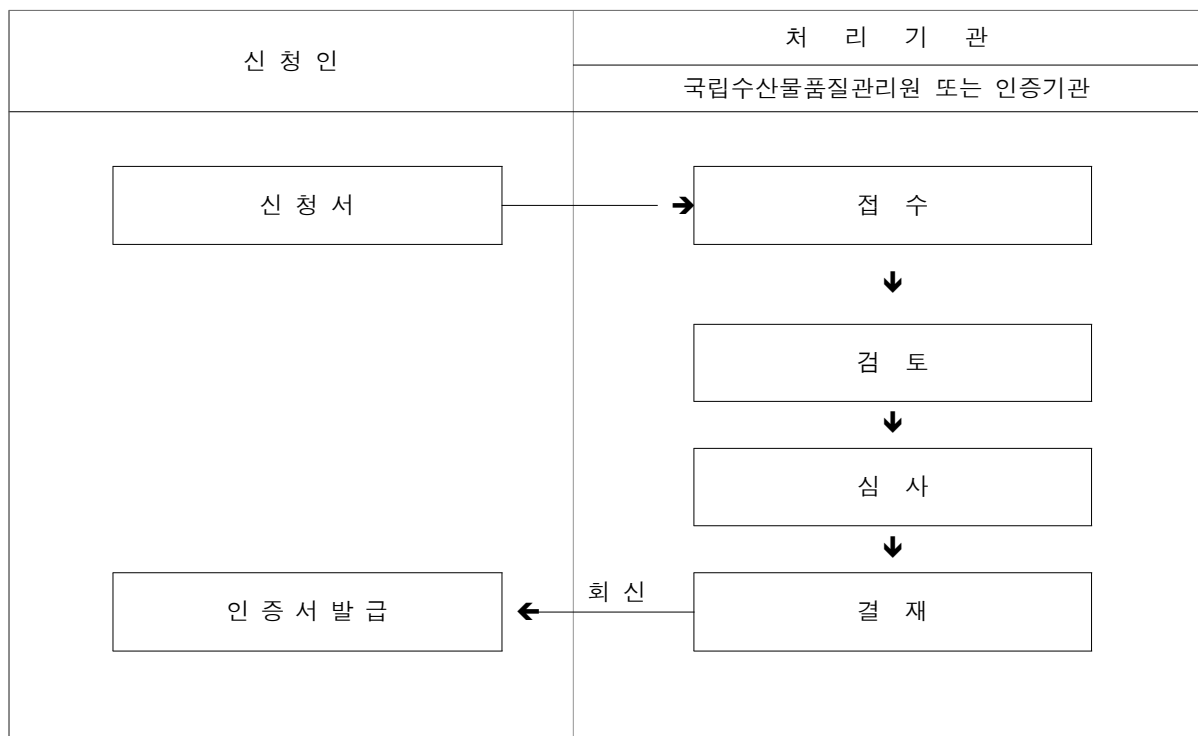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 방법

1.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2. 작성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3. 문자는 검은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원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4. 신청 단위는 인증을 받으려는 주체에 따라 개인, 법인, 단체로 구분하여 √표시하며 개인과 법인은 생산자 수를 1로 적고, 단체는 인증 신청한 집단의 소속 생산자 수(1가구를 1로 계산합니다)를 적습니다.
5. 주소란에는 법인 또는 취급자의 도로명 주소를 적습니다.
6. 사업장 소재지는 지번까지 적어야 하며, 소재지가 여러 곳인 경우에는 별지를 첨부하여 적습니다.
7. 신청품목은 인증 신청한 품목의 명칭을 모두 적습니다.
8. 신청인이 단체인 경우에는 인증품 취급계획서는 취급자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9. 인증 갱신신청 또는 인증품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 첨부서류 중 제3호 및 제4호는 관련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인증 재심사 신청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명(단체명)	생산자 수 (취급자 수)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신청 내용	재심사 신청항목	
	재심사 신청사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5항(제34조제4항) 및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4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기식품(무항생제수산물등) 인증의 재심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인증기관~~의~~장

귀하

첨부사유	재심사 신청사유를 입증하는 자료	수수료 없 음
------	-------------------	------------

작성 방법

1. 기재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2. 재심사 신청항목은 인증기관에서 부적합 사유로 통보한 사항 중 재심사가 필요한 항목을 기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인증번호: 제 호 (Certification No.:)			
인 증 서 CERTIFICATE			
《생산자용》 (For Producer)			
인증 구분 (Certification Type)		유효기간 (Term of Validity)	
생 산 자 (Producer)		사업자등록번호 (Business Registration No.) (생년월일) (Date of Birth)	
주 소 (Address)			
사업장 소재지 (Business Location)			
인증 품목 (Item Certified)		인증 면적 (Certified Area for Producing)	
인증 부가조건 (Additional Condition for Certification)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4조) 및 「해양수산물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4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유기수산물, ☐ 무항생제수산물, ☐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의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인증합니다. It is hereby certified that the item specified at above satisfies certification standard of ☐ organic fishery product, ☐ antibiotic-free fishery product, and/or ☐ activating treatment agent-free products in accordance with the Act on Promotion of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e and Fisheries and Management and Support for Organic Foods of the Republic of Korea 년 월 일 (Certification Date: /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인증기관 의장 CHIEF OF NATIONAL FISHERY PRODUCTS QUALITY MANAGEMENT SERVICE DIRECTOR OF CERTIFICATION INSTITUTION			직 인

※ 수입국이 요구할 경우 그 국가의 언어로 작성할 수 있다.

210mm×297mm[백상지 120g/㎡]

인증 변경승인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단체명)	인증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변경내용 (※ 별지로 작성할 수 있음)	구 분	당 초	변 경
	[] 사업장 규모 변경 [] 인증서 기재사항 변경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5항(제34조제4항) 및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제4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인증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인증서 원본 2.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이유를 적은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수, 검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증기관 의 장	→ 심 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증기관 의 장	→ 변경여부 판정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증기관 의 장	→ 지정서 재발급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증기관 의 장

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

인증품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 실적 보고서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제40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인증품의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 실적을 제출합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인증기관~~의~~장

신고인	법인(단체)명	생산자 수				
	대표자 성명	인증번호				
	연락처	제출일				
출하 내용	출하기간					
	주요 출하처					
	품목	출하량(kg)	품목	출하량(kg)		

인증품 재검사 신청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	------	---------

신청인	성 명(단체명)	생산자 수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재검사 의뢰 유해물질	수거장소

재검사신청 사유	
-------------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4항 및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의2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품의 재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 귀하

첨부자료	재검사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 1.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2. 기재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 3. 재검사 신청항목의 재검사 의뢰 유해물질은 부적합 사유로 통보된 잔류물질 등 재검사가 필요한 항목을 기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인증사업자 승계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개월

승계인 []개인 []법인 []단체	성명(개인사업자의 경우)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개인, 법인, 단체의 주소	생산자(제조·가공 또는 취급자) 수

승계내 용	인증 번호
	사업장 소재지
	인증 면적
	인증 품목
	승계 사유 [] 상속 [] 양수(讓受) [] 합병 [] 그 밖의 사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또는 제34조제5항 및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또는 제4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기식품(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인증기관~~의~~장

첨부서류	1.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품 생산계획서 또는 같은 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인증품 제조·가공 및 취급 계획서 1부 2. 인증사업자 승계사실 증명자료 1부 3. 승계받은 인증서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동 의 서

1. 인증 업무처리를 위하여 상기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인증유효기간 동안 수집·이용함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 인증품의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인증을 받은 사업자의 정보와 인증내용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친환경농어업 육성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은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